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2058
------	------

2024.08.12.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4년 8월 14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24.11.25.) 상정,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2024.11.26.) 상정, 의결(수정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경제실장 이해우)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서울의 신성장 동력이 될 미래 산업(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등)을 육성하고자 2019년부터 우수한 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중소·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펀드를 조성·운영 중임.

- 이에 '25회계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되는 펀드 출자계획(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자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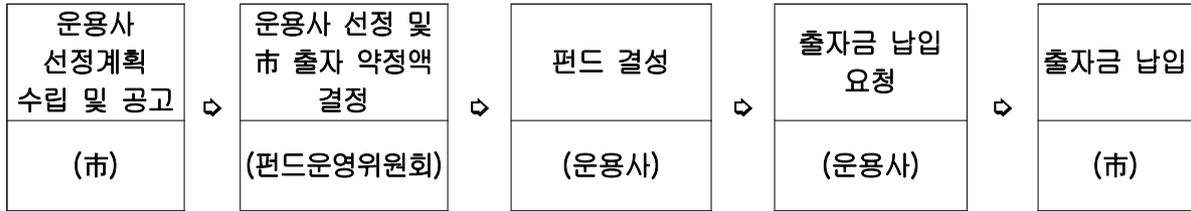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제1항제1호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제4항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제1항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기금의 용도) 제2항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3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제1항

나. 출자 개요

- 출자사업

펀드명	市 출자약정액	조성액	조성기간
미래혁신성장펀드	1,751억원	3조 6,857억원	'19년~'22년
서울 Vision 2030 펀드	3,500억원	5조원(목표)	'23년~'26년
녹색기업창업펀드 제5호	20억원	200억원	'23년

〈 서울시 벤처펀드 출자 방식 〉



- *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 → 펀드 결성
- * 투자기간(4년) 동안 출자금 분할 납입 → 회수기간(4년) 동안 출자금 회수
- ※ 출자금 납입 후 출자증권 취득

- 출자 재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 ' 25년 출자계획(안) : 1,013억원
 - 미래혁신성장 펀드 : 187억원
 - 서울 Vision 2030 펀드 : 817억원
 - 녹색기업 창업펀드 제5호 : 9억원

※ 기 조성된 펀드의 ' 25년 출자 예상액 및 ' 25년 조성 펀드의
市 출자 약정액 규모(890억원)을 고려하여 산출

다. 출자 필요성

- 총 3.7조원 규모의 미래혁신성장 펀드는 ' 19년부터 조성되어 차세대 신산업 분야의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해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 * 피투자기업 600개사, 매출증대 2조 3,873억원, 고용창출 6,993명 (' 23년말 기준)

- 총 5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서울 Vision 2030 펀드는 ' 24년까지 2.4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였으며, 첨단제조 등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

* 연도별 市 출자약정액 : (' 23년) 700억원 (' 24년) 810억원
(' 25년) 890억원 (' 26년) 1,100억원

- ' 23년 200억원 규모로 조성된 녹색기업창업펀드 제5호는 서울 소재 녹색기업에 투자하여 녹색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 23년 조성 후 2개사 17억원 투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제1항

제59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제5조(기금의 용도) ② 투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
2.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3조제1항

제23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실증사업에 대한 실증장소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반영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준석)

가. 동의안의 개요

- 동 동의안은 서울의 신성장 동력이 될 미래 산업(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등)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을 미래혁신성장펀드와 서울비전2030펀드, 녹색기업 창업펀드에 제5호에 출자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됨.

나.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조성 및 운용 현황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 저리의 융자지원으로 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65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음.
- 그리고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및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조 2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수행하는 미래혁신성장펀드의 효율적인 조성·운영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계정’ 과 ‘투자계정’¹⁾으로 분리·운용하고 있음²⁾.
- 미래혁신성장펀드는 2019년 최초 조성을 시작하여 2022년 조성이 종료되었으며, 2024년 현재까지 서울 소재 주목적 투자 대상 기업 520개사에 8,729억원이 투자되었으며 투자시점 대비 1조 2,863억원의 매출액 성장과 8,236명의 고용증가 성과가 보고되었음.

1) 2018년 10월에 신설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은 융자계정과의 기능 분리와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융자계정으로부터 기금관리비(4억 7천 2백만원)와 펀드운용수입(24억 9백만원)을 이체 받았고, 향후 발생하는 펀드의 회수액은 투자계정 수입으로 귀속되도록 하였음.

2) 융자계정은 민생노동국 소관이며, 투자계정은 경제실 소관임.

< 혁신성장펀드 주목적3) 투자실적 >

(단위 : 억원,개)

구분	합계	2019	2020	2021	2022
합계	8,729 (520개)	283 (7개)	1,907 (45개)	3,544 (74개)	2,988 (25개)
4차산업혁명	2,651 (151개)	122 (1개)	803 (20개)	1,333 (37개)	393 (19개)
스마트시티	1,012 (77개)	5 (1개)	174 (20개)	557 (25개)	276 (22개)
문화콘텐츠	865 (67개)	92 (4개)	197 (16개)	358 (25개)	218 (22개)
창업지원	2,129 (135개)	24 (4개)	381 (33개)	694 (48개)	1,030 (50개)
재도전지원	244 (19개)	- (-)	77 (8개)	142 (8개)	25 (3개)
바이오	1,821 (71개)	40 (2개)	275 (14개)	460 (18개)	1,046 (37개)

*()는 투자 받은 기업 수, 중복 포함

- 펀드는 4년 투자 후 4년간 수익을 회수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미래혁신성장펀드는 2023년부터 단계별 회수 기한이 도래하고 있으며, 2023년에 회수한 투자금은 총 21억 6백만원임.

< 2023년 투자계정 투자금회수 사업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거래일	세부내역	거래금액
23. 01. 19.	2019년 조성 문화콘텐츠 펀드 투자기업 투자금(2개) 회수	280
23. 03. 30.	2020년 조성 재도전 펀드 투자기업 투자금(1개) 회수	49.6
23. 08. 08.	2020년 조성 서울바이오 펀드 투자기업 투자금(2개) 회수	52.5
23. 08. 17.	2020년 조성 스마트시티 펀드 투자기업 투자금(1개) 회수	79.8
23. 08. 31.	2022년 조성 창업지원 펀드 투자기업 투자금(1개) 회수	180
23. 08. 31.	2019년 조성 4차산업혁명 펀드 투자기업 투자금(2개) 회수	83
23. 09. 07.	2020년 조성 4차산업혁명 펀드 투자기업 투자금(3개) 회수	96
23. 10. 06.	2019년 조성 창업지원 펀드 투자기업 투자금(1개) 회수	70
23. 10. 31.	2019년 조성 4차산업혁명 펀드 투자기업 투자금(1개) 회수	88.4
23. 11. 08.	2019년 조성 서울바이오 펀드 투자기업 투자금(1개) 회수	288
23. 11. 13.	2020년 조성 서울바이오 펀드 투자기업 투자금(1개) 회수	122.5
23. 12. 04.	2020년 조성 4차산업혁명 펀드 투자기업 투자금(2개) 회수	202.4
23. 12. 05.	2020년 조성 재도전지원 펀드 투자기업 투자금(2개) 회수	172.3
23. 12. 11.	2019년 조성 문화콘텐츠 펀드 투자기업 투자금 회수	333.3
	계	2,097.8

3) 주목적 투자 : 미래혁신성장펀드 6개 주요 분야별 서울시 주목적분야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23. 12. 31. 기준)

분야	조합명	조성년	조성규모	시 출자 약정액	시 납입액 ('23년 기준)
	프리미어 IBK K-바이오 백신 투자조합	2023년	114,630	5,000	500
문화콘텐츠 (5개)	엠아이피(MIP)컬처테크융합투자조합	2023년	25,500	2,500	500
	2023 IBK, 캡스톤 K-유니콘 투자조합	2023년	30,000	2,500	500
	나우 K-문화 M&A 투자펀드 1호	2023년	33,500	2,500	125
	대교 K-콘텐츠 스케일업 투자조합	2023년	21,510	1,500	-
	서울벤처다스기비펀드 조성 신설 투자조합	2023년	30,000	1,000	-
※ '23년 운용사를 선정하였으나 실질적인 운용이 24년부터 이뤄지는 경우, 시 납입액을 '-'으로 표시(펀드 결성 완료 시점에 출자금 납입)					

- 이후 서울시는 2030년 세계 5위 창업도시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서울 창업정책 2030 추진계획」을 수립⁶⁾하고, 서울비전2030펀드에 제조특화펀드의 신규 조성으로 첨단제조 스타트업에 집중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서울비전2030펀드 조성·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⁷⁾함.
- 이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면서 서울비전2030펀드는 첨단제조 펀드 신설 외 기존 창업지원펀드의 종료, 문화콘텐츠산업펀드 확대, 첫걸음동행펀드 재구조화 등의 조정이 이뤄지면서 2024년 이후 세부 분야별 출자액이 변경됨.
 - 창업 7년 이내 서울 소재 기업을 지원하는 창업지원펀드는 유사목적의 투자를 포함하고 있는 첫걸음동행펀드에 통합·종료되고 펀드의 재원은 첨단제조와 창조산업 펀드 재원으로 활용됨.
 - 뷰티·패션 산업 지원이 첫걸음동행펀드에서 창조산업펀드로 이관됨에 따라 창조산업펀드 출자액 증액 및 조성목표가 상향되었고 첫걸음동행펀드 출자액은 감액되었으며, 민간투자가 활발한 스케일업펀드는 출자액을 감액하고 미래산업 지원 재원으로 활용됨.

6) 서울 창업정책 2030 추진계획: 2023.7.5. 창업정책과(민선8기 공약사항 반영)

7)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기금운용심의회(2024. 5. 9.)

< 서울비전2030펀드 연도별 조성·출자 변경 계획 >

(단위 : 억원)

분 야		비 율	조성목표 (출자액)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100%	50,000 (3,500)	10,650 (700)	11,750 (810)	12,500 (890)	15,100 (1,100)
업종	디지털대전환	20%	10,000 (600)	2,000 (100)	2,500 (150)	2,500 (150)	3,000 (200)
	바 이 오	15%	7,500 (400)	1,900 (100)	1,900 (100)	1,900 (100)	1,800 (100)
	첨 단 제 조 (2024년 신설)	12%	6,000 (600)	-	1,500 (150)	2,000 (200)	2,500 (250)
	창 조 산 업 (문화콘텐츠 확대)	20%	10,000 (600)	1,500 (100)	2,550 (150)	2,550 (150)	3,400 (200)
기업 성장 단계	첫 걸 음 동 행	5%	2,500 (350)	500 (100)	500 (60)	750 (90)	750 (100)
	스 케 일 업	24%	12,000 (850)	2,750 (200)	2,800 (200)	2,800 (200)	3,650 (250)
종료	창 업 지 원	4%	2,000 (100)	2,000 (100)	-	-	-

다. 출자의 타당성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은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 기금을 통해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출자를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서울비전2030펀드 등에 출자하고자 하는 등 동의안은 법적 요건을 충족함.
- 또한 국제정세와 금융환경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와 투자심리 위축으로 벤처투자와 벤처펀드 결성이 감소하면서 신기술 스타트업 기업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는 만큼 펀드결성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투자 필요성도 인정된다 하겠음.

- 다만 서울시는 펀드 조성을 시작한지 1년 만에 펀드 조성 목표와 출자액 등을 수정하였는바, 펀드 투자를 통한 서울시 기업투자가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면밀한 펀드 조성계획의 수립과 추진이 요구됨.
- 한편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편성된 투자계정 출자액은 동 동의안에 명시된 금액 대비 411억원(40.6%)이 감소된 602억원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는 규정에 따라, 동 동의안이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편성되기 전인 지난 8월에 제출되었기 때문임.
- 이와 같은 현상은 과거부터 지속되어왔던 것으로, 시의회의 출자 동의 안의 심의는 궁극적으로 출자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출자 사업의 효과성, 출자 규모의 적정성, 법적 근거의 타당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출자 여부 판단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출자 규모에서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출자 자체에 대한 심각한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는 결국 시의회의 심의권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 따라서 서울시는 동 출자 동의안을 비롯한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동의안의 제출시기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동 동의안의 출자금은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의 심의 확정분에 맞게 조정이 필요함.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액 변경안 >

구 분		출자액(원안)	출자액(수정안)
계		1,013억원	602억원
미래혁신성장 펀드		187억원	116억원
①	4 차 산 업 혁 명	30억원	11억원
②	스 마 트 시 티	38억원	38억원
③	창 업 지 원	53억원	18억원
④	재 도 전 지 원	12억원	8억원
⑤	서 울 바 이 오	49억원	36억원
⑥	문 화 콘 텐 츠	4억원	5억원
서울 Vision 2030 펀드		817억원	477억원
①	디 지 털 대 전 환	140억원	71억원
②	서 울 바 이 오	78억원	60억원
③	첨 단 제 조	125억원	58억원
④	창 조 산 업	144억원	75억원
⑤	첫 걸 음 동 행	88억원	49억원
⑥	스 케 일 업	220억원	144억원
⑦	창 업 지 원	23억원	21억원
녹색기업창업 펀드 제5호		9억원	9억원
녹 색 기 업 창 업 펀 드 제 5 호		9억원	9억원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맞춰 동의안의 출자계획안 및 각 펀드별 출자액을 수정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동의안의 내용 중 2025년 출자계획(안) 1,013억원을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맞춰 602억원으로 수정하고, 각 펀드의 출자액을 수정함.

V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058
----------	---------

제안일자 : 2024년 11월 25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2025년도 서울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맞춰 동의안의 출자계획(안) 및 각 펀드별 출자액을 수정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동의안의 내용 중 2025년 출자계획(안) 1,013억원을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맞춰 602억원으로 수정하고, 각 펀드의 출자액을 수정함.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주요 내용 중 2025년 출자계획(안)과 펀드별 출자액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 25년 출자계획(안) : 602억원
 - 미래혁신성장 펀드 : 116억원
 - 서울 Vision 2030 펀드 : 477억원

수정안 조문 대비표

동 의 안	수 정 안
2. 주요내용 가. (생략) 나. 출자개요 ◦ (생략) ◦ (생략) ◦ '25년 출자계획(안) : 1,013억원 - 미래혁신성장 펀드 : 187억원 - 서울 Vision 2030 펀드 : 817억원 - 녹색기업 창업펀드 제5호 : 9억원	2. 주요내용 가. (생략) 나. 출자개요 ◦ (생략) ◦ (생략) ◦ '25년 출자계획(안) : 602억원 - 미래혁신성장 펀드 : 116억원 - 서울 Vision 2030 펀드 : 477억원 - 녹색기업 창업펀드 제5호 : 9억원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의안번호	2058
------	------

2024.08.12.
기획경제위원회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서울의 신성장 동력이 될 미래 산업(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등)을 육성하고자 2019년부터 우수한 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펀드를 조성·운영 중임
- 나. 이에 '25회계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되는 펀드 출자계획(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출자 근거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제1항제1호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제4항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제1항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기금의 용도)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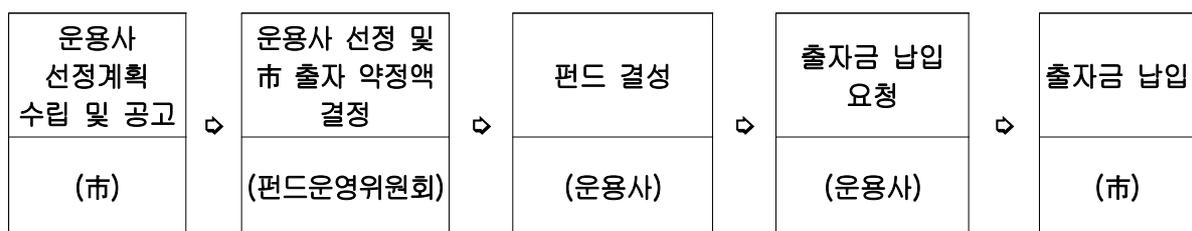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3조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제1항

나. 출자 개요

○ 출자사업

펀드명	市 출자약정액	조성액	조성기간
미래혁신성장펀드	1,751억원	3조 6,857억원	'19년~'22년
서울 Vision 2030 펀드	3,500억원	5조원(목표)	'23년~'26년
녹색기업창업펀드 제5호	20억원	200억원	'23년

< 서울시 벤처펀드 출자 방식 >



*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

→ 펀드 결성

* 투자기간(4년) 동안 출자금 분할 납입 → 회수기간(4년) 동안 출자금 회수

※ 출자금 납입 후 출자증권 취득

- 출자 재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 ' 25년 출자계획(안) : 602억원
 - 미래혁신성장 펀드 : 116억원
 - 서울 Vision 2030 펀드 : 477억원
 - 녹색기업 창업펀드 제5호 : 9억원
- ※ 기 조성된 펀드의 ' 25년 출자 예상액을 고려하여 산출

다. 출자 필요성

- 총 3.7조원 규모의 미래혁신성장 펀드는 ' 19년부터 조성되어 차세대 신산업 분야의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해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 * 피투자기업 600개사, 매출증대 2조 3,873억원, 고용창출 6,993명(' 23년말 기준)
- 총 5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서울 Vision 2030 펀드는 ' 24년까지 2.4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였으며, 첨단제조 등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
 - * 연도별 市 출자약정액 : (' 23년) 700억원 (' 24년) 810억원
(' 25년) 890억원 (' 26년) 1,100억원
- ' 23년 200억원 규모로 조성된 녹색기업창업펀드 제5호는 서울 소재 녹색 기업에 투자하여 녹색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 ' 23년 조성 후 2개사 17억원 투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제1항

제59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제5조(기금의 용도) ② 투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
2.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3조제1항

제23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실증사업에 대한 실증장소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반영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